

국가인권위원회 내 혁신위원회 출범 … 과거 성찰과 미래 혁신안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30일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위촉 구성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이하 혁신위, 위원장 하태훈)를 발족했다.
- 혁신위는 향후 3개월간 출범 16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위의 과거 성찰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 인권전담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인권위는 지난 6월 약 3주간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업무혁신 TF’를 구성, 이미 혁신과제 다수를 발굴하고 현재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업무혁신 TF는 짧은 기간과 내부 직원 구성 등의 한계로, 최종보고서를 통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에 출범하는 혁신위가 업무혁신 TF의 혁신과제를 더욱 발전시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인권위 혁신안을 제시해주리라 기대한다.
- 특히 이번 혁신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 규정에 근거,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때문에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기구로서 혁신위는 혁신안의 실질적 효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자리에서 “그동안 인권위에 대한 많은 질책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인권위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혁신의 노력으로 거듭나야한다. 혁신위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앞으로 인권위는 혁신위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며, 이번 혁신위 출범을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새 출발점이 되도록 할 것이다.

붙임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개요 및 위원 구성 1부. 끝.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개요 및 위원 구성

1.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으로 설치한 공식 법적 자문기구
- 2017. 10. 23. 전원위원회에서 설치 근거가 되는 운영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99호)과 위원 구성안을 의결
 - ※ 규칙 전문은 붙임 1 자료
- 위원은 총 15명(내부직원 3명)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을 돕기 위해 위원회 직원 중 2명을 간사로 별도 지명 가능
 - ※ 위원명단은 붙임 2 참조

2.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주요 골자

- (명칭)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 (기능) 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방안, 위원회 조직·재정·운영 등에 관한 혁신 방안, 그리고 기타 국가인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위원) 위원은 인권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국가인권위원장이 위촉(단, 내부위원은 인권위원장이 위원회 직원 중 3인을 지명)
- (위원장) 혁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권위원장이 위촉
- (간사) 위원회 내부 직원 중에서 2인 이내의 간사를 인권위원장이 지명, 간사는 혁신위원회의 의사를 보좌하되 안전에 대해 의견 진술 가능
- (운영기간) 3개월 이내

-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2.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17. 10. 2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9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방안
2. 위원회 조직·재정·운영 등에 관한 혁신 방안
3.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혁신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에 권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조(구성) ① 혁신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위원회 위원(이하 “혁신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내부 혁신위원으로 위원회 직원 중 3인을 지명할 수 있다.

1. 인권의 보장과 향상에 기여한 사람
2. 인권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혁신위원 중에서 혁신위원회 위원장(이하 “혁신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④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제4조(해촉) 위원장은 혁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혁신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 곤란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혁신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대표하고 혁신위원

회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혁신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혁신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혁신위원회는 혁신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혁신위원회의 안건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혁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혁신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혁신위원회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간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② 간사는 혁신위원회 의사를 보좌하되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외부 혁신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기간) 혁신위원회는 그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한다.

부칙 <제99호, 2017. 10. 23.>

이 규칙은 전원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 및 간사

구분	연번	성명	소속 및 경력
위원장	1	하 태 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전공) 참여연대 공동대표
외부 위원 (가나다순)	2	명 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공동행동 집행위원
	3	박 래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재단사람 소장 전 서울시인권위원회 부위원장
	4	박 옥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인권운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5	신 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사회연대 대표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
	6	장 윤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원)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인권위원, (사)한국여성변호사회
	7	정 영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팀장
	8	최 은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이)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국젠더법학회 이사
	9	홍 성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10	황 필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간사
내부 위원	11	조 영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12	최 재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장
	13	박 병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총괄 사무관